



Bill de Blasio
Mayor

Consumer
Affairs

Lorelei Salas
Commissioner

직원 권리에 관한 통지서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및 기타 가정 내 근로자 대상

뉴욕시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 조례(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법률)에 따라 가정 내 근로자에게는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nyc.gov/PaidSickLeav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가구 고용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 가정 내 근로자의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짜 또는 2018년 6월 4일 중 늦은 날짜를 기한으로 고용주로부터 본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안전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 폭력이나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스토킹 또는 인신매매 등의 실제 행위나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움을 청하거나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귀하는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가는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되지 않는 가정 내 근로자:

적용됨	적용되지 않음
<p>가구 또는 가족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이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가정 내 근로자가 맞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돌보기 • 고령자, 환자, 장애인 또는 요양/회복 중인 사람의 병간호 책임자 • 요리 및 청소와 같은 가사일(살림) 관련 서비스 수행 	<p>가구를 대상으로 왼쪽에 설명된 의무를 수행하되, 대행업체 고용주를 통해 고용된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가정 내 근로자”가 아니며 본 고지서의 대상이 아닙니다.</p> <p>대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직원으로서 최대 40시간의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nyc.gov/PaidSickLeav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뉴욕주 법률에 따라 “가정 내 근로자”로 간주되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p>

안전 휴가 및 병가 일수:

- 고용주는 1년의 고용 기간이 지난 후 매년 2일의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 조례에 따른 휴가는 뉴욕주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 사흘에 추가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 정부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주어지는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abor.ny.gov로 이동하여 “가정 내 근로자 권리 장전(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사용 가능한 날짜:

- 병가는 2015년 4월 1일 또는 근무를 시작한 후 1년이 경과한 날짜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 휴가는 2018년 5월 5일 또는 근무를 시작한 후 1년이 경과한 날짜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휴가 및 병가 사용에 적합한 사유: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 부상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 부상 또는 증상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관리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본인이 예방 차원에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 부상 또는 증상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관리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을 간호해야 하는 경우
- 공중 보건상의 응급 상황으로 인해 고용주의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또는 공중 보건상의 응급 상황으로 인해 학교 또는 탁아 시설이 폐쇄되어 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 폭력이나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스토킹 또는 인신매매 행위(실제 또는 발생 위협 모두 포함) 피해자라서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건강이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자 또는 함께 근무하는 인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예를 포함:
 - 가정 폭력 대피소, 성폭력상담소(Rape Crisis Center, RCC) 또는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습니다.

[더 보기 >](#)

- 안전 계획, 이사 또는 여타 행동 등 본인의 신변 안전 또는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참여합니다(자녀의 새 학교 전입도 포함).
- 양육권, 방문권, 부부간의 문제, 보호 명령, 이민, 거주 및 고용, 거주 또는 소비자 신용 면에서의 차별 등에 관련한 정보 및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 또는 사회 복지사와 면담합니다.
- 법 집행 기관에 가정 폭력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검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가족 구성원:

법률상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모든 인물을 가족과 같은 것으로 간주함
- 자녀(친자, 입양 또는 위탁 자녀, 법적 피보호자, 해당 근로자가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는 고용인의 자녀 등)
- 손주
- 배우자
- 동거인
- 부모
- 조부모
-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자녀 또는 부모
- 형제자매(이복, 입양 또는 의붓형제 및 자매 포함)
- 해당 근로자와 혈연관계가 있는 기타 모든 인물

사전 통지: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고용주가 귀하에게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최대 7 일 전에 그러한 의사를 사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 휴가 및 병가가 필요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휴가 사용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류:

근무일 기준 3일 이상 연속으로 안전 휴가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 조례에 따르면 고용주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병가 사용의 의학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거나 안전 휴가 증빙 서류를 요구하여 가정 폭력 또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스토킹 또는 인신매매 사실 또는 위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 휴가 및 병가 사용에 있어 고용주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귀하(근로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요청하여 사용
-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에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불만 접수
- 타인(동료 포함)과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해 상의
-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소송(법적 절차)에 관여
- 타인에게 해당 인물에게 허락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에 대해 고지

보복 행위에는 각종 위협, 징계, 해고, 좌천, 정직 또는 근무 시간을 비롯해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본인에게 보장된 각종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 시도한 데 반하여 취하는 불리한 고용 관계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귀하에게는 불만 사항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DCA 에 불만 사항 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불만 사항 신고 양식은 nyc.gov/PaidSickLeave 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311(뉴욕 시외에서는 212-NEW-YORK)번으로 전화 문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DCA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 사항을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DCA에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또는 법률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합니다.

본 고지서의 사본은 물론, 본인의 사용 가능한 안전 휴가 및 병가 기록이 표시된 모든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오.

참고: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 조례에는 안전 휴가 및 병가의 최소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의 휴가 정책이 이미 법률상의 요건에 부합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도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는 이 고지서를 영어로 받아볼 권리가 있으며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번역본이 DCA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언어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nyc.gov/PaidSickLeave 를 참고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여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관련 정보를 요청하십시오.